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3/20 통권 166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미래를 위한 투자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용개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연구개발 사전심사 R&D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 2024년 회계공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 한 단계 높아진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세무상 손손익액 계산시 임의 내용연수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로 변경해 재계산해야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법인 업무용 승용차비용의 손금불산입>

개념, 구분	판단, 구분, 계산방법 등
1. 대상범위	법인 운영 승용자동차(운수, 판매, 차 임대, 운전학원, 시설대여 및 연구개발용은 제외됨)
2. 구분방법	업무전용 : 경차, 9인승, 트럭 등 제외 ↔ 업무용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캠핑용 등) 불산입 해당
3. 해당비용	구입차 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비,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4. 공통 요건	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 임 · 직원만 보상하는 전용보험 가입요건, 일반 보험이면 전액 비용반영불가) ② 운행기록부 작성(운행기록부의 실제 운행거리만큼 비용인정, 미작성시 연간 1500만원까지는 전액 비용인정) ③ 운행기록부는 날짜,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거리 등 서식 기재함 ④ 계산사례 : 총비용 2500만원 × 업무수행거리 80% = 2천만원 비용반영, 500만원 급여처리
5. 운행부 미작성	① 1,500만원까지 전액 비용 ② 1,500만원 초과액 × 1500만원 / 총비용 : 비용부인함
6. 고가차량	① 1년당 감가비, 렌트비, 리스비 800만원까지 비용, 연 8백만원 초과액은 이월하여 감가상각 종료 후 부족범위에서 이월하여 비용인정공제 ② 승용차 비용 총액계산시 감가비 등은 800만원까지 + 다른 비용으로 판단함 ③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대하여 리스로 97%, 렌트비 70%로 판단함
7. 부동산 임대	① 총비용은 1,5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② 감가비는 8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임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4년 3월 20일(수) · 주간제12호 · 통권 제1667호 ·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7호 / 주간 12호

2024. 3. 20.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손금불산입	표지
C E O 에 세 이	미래를 위한 투자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주류 위탁판매 문의 -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 중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 문의 - 약정에 의해 채권 대손처리 건 문의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공개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 주요 내용	9 10
직장인 Survival	제스처로 사람을 읽는 법 8가지-②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 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792, 2023.03.16) -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691, 2023.03.15)	12 13
세 정 뉴스 와 해 설	'13월의 월급' 이르면 19일 받는다...국세청, 지급일정 10일 이상 단축	14
마 케 팅 Tax consulting	세무상 손손익액 계산시 임의 내용연수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로 변경해 재계산해야함	12
세 무 정 보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연구개발 사전심사 R&D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15 27 31 46
회 계 정 보	- 2024년 회계공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 한 단계 높아진다	4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미래를 위한 투자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ee@hotmail.com

세계는 그동안 차이나 쇼크·환경쇼크·금융쇼크 등 온갖 쇼크를 겪어왔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속도만큼 중국이 세계의 원자재를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다. 그래서 석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자원 빈국 한국은 항시 출렁거리게 되어 있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 외에 우라늄, 구리, 아연, 철, 희토류와 유연탄 등은 6대 전략 광물로 국가적으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한 국가적 노력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경제 성장만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다. 환경보호는 비단 현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자원과 환경은 장래에 물려줄 가치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자원개발기술과 환경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는 어느 나라에서건 뜨거운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지의 세계가 자원을 개발하는 인재를 부르고 있다. 또 세포융합 등의 생물공학기술관련 인재를 미래는 환영하고 있다.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 자동차는 2001년 인도네시아에 수십만 평의 초대형 고구마농장을 샀다. 그리고 도요타는 농장 바로 옆에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고구마를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폐차 때 따로 떼어내어 가공처리를 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남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였다. 현재 수소를 뽑아내는 가장 경제적인 자원은 석유다. 그러나 앞으로 석유자원이 고갈될 경우 상황은 다르다.

고구마는 어떤 자원보다도 순도 높은 천연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원료가 된다. 도요타는 연료전지가 대중화 될 현재를 대비해 그 당시부터 값싼 양질의 고구마 농장과 가공시설을 선점했던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는 오랜 시간 친환경 에너지 자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21세기는 탈석유에너지자원 쟁탈전 시대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열중 쉬엇’하고 있지 않아 다행이다. 석유 고갈 후

최대의 에너지 자원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부각된 적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지구의 매장량과 미래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한 TV방송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러시아 오호츠크해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시추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자원개발 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와 러시아의 실태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취재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 하에서 메탄이 물분자 내에 결합하여 형성된 얼음같은 고체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으면서 나오는 메탄은 천연가스가 쓰이는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다. 전 세계에 약 2조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200-500년간 사용가능한 엄청난 양이다. 또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CO₂량은 휘발유에 비해 적으면서도 그 발열량은 월등히 높다고 알려졌다.

러시아 오호츠크해 탐사는 한국, 러시아, 일본의 3국 합동프로젝트로 진행되었는데, 이곳에는 전세계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14%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기관은 모두 동해를 매장추정지로 지목했고, 매장량은 최소 6억 톤. 한국의 30년분 가스 소비량으로 약 252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한다.

다만 10여년에 걸친 연구에도 불과하고 채굴 방식과 비용에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지원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때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8일 (금)	3월 11일 (월)	3월 12일 (화)	3월 13일 (수)	3월 14일 (목)
미	달	러	(USD)	1329.60	1323.10	1314.40	1311.10	1312.80
일	본	엔	(JPY)	898.89	900.47	894.73	888.55	889.10
영	국	파운	(GBP)	1703.22	1700.18	1684.08	1677.42	1680.52
캐	나	다 달	(CAD)	988.07	980.80	974.93	971.87	974.57
홍	콩	달	(HKD)	170.01	169.19	168.04	167.57	167.80
중	국	원	(CNH)	184.50	183.86	182.69	182.63	182.53
유	로	화	(EUR)	1455.71	1447.34	1436.05	1432.90	1437.45
호	주	달	(AUD)	879.86	875.83	869.21	866.37	869.53
싱	가	폴 달	(SGD)	997.19	993.65	987.97	984.20	985.47
말	레	이 시 아 링	(MYR)	282.56	282.41	280.64	280.29	280.03

주류 위탁판매 문의

Q 당사는 영업장에서 와인을 와인업체에서 구매하여 일반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와인회사의 일정 수량의 와인을 당사 영업장에서 먼저 판매하고, 한달 후에 판매된 수량만큼만 정상 매입처리 (세금계산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주세법 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A 주세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주류의 수입시 과세하는 것으로, 귀사의 질의는 주세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사의 영업장에서 귀사가 매입하지 않은 물품을 먼저 판매후 추후 매입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행위인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 중 문의드립니다

Q (질문) 부가세 신고서 양식 31번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 것이지요?
 - 갑설 : 매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닌 항목을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다.
 (예시, 건물 및 구축물의 고정자산 매각금액, 직매장 공급금액 등)
 '수입금액'의 의미를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입장
 - 을설 : 손익계산서 항목 중 '매출액' 부분이 아닌 '영업외수익' 항목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발행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즉, 주된 영업수익이 아닌 항목을 기재한다. '수입금액'의 의미를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입장

A 부가가치세 신고서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귀사의 질의중 갑설이 타당합니다.

약정에 의해 채권 대손처리 건 문의

Q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국 상해에 현지업체와 50:50의 비율로 합작법인을 2013년에 설립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누적 적자가 심화되어 자본 잠식된 상황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해당 합작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합니다.

1. 양도가격은 0

2. 당사가 이 합작법인에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이 약 US 360만 달러가 있는데 7백만 RMB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관련내용 찾아본 바로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금액만 손금불산입이 될런지, 아니면 회수 못하는 전체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변개정)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A 귀사의 의견대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접대비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공개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선진기술 및 선진기법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거래가 빈번해졌다.

이렇게 선진기술이나 기법 등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술 도입대가의 지급과 원천징수 등 세무상의 처리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기술도입 등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워 실무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도입을 문서나 서류만이 아닌 기술자가 파견되어 전수시키기 때문인데, 이렇게 기술자를 통해 기술도입을 하는 경우 기술에 초점을 맞춰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술의 비공개성인데,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면 된다.

또한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이 가능한데, know-how(사용료소득)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재국조46017-5, 2003. 1. 16).

반면에 인적용역 제공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

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의 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warranty)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구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념	· 무형의 가치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 방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 설계용역 대가의 경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 특허권 등이나 know-how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지 아니며 금액이 큼
⑨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도면		·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 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국가전략기술 개요

	대표기술	세액공제
반도체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 기술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시설투자 기준)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백신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수소	수전해 기본 청정수소 생산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신약 발굴 및 신약 제조 기술	

화 — 경제 공약 뜯어보기

정부·여당 감세 정책	야당 감세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 증권거래세 인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 상속세 개편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연 150만원 → 200만원) • 가상자산 투자수익 연 5000만원 비과세 •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 주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 농어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 농어민형 1천만원)
신설	국내투자형 ISA	-	비과세 혜택 1천만원 (서민, 농어민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 단,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없이 14%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 전후 세금 비교 예시

	현행 ISA		개정 ISA	
	적립금 누적액	연간 배당금(연 5%)	적립금 누적액	연간 배당금(연 5%)
1년차	2000만원	100만원	4000만원	200만원
2년차	4000만원	200만원	8000만원	400만원
3년차	6000만원	300만원	1억2천만원	600만원
4년차	8000만원	400만원	1억6천만원	800만원
5년차	1억원	500만원	2억원	1000만원
5년 누적	1억원	1500만원	2억원	3000만원
일반과세	1500만원 × 15.4% = 231만원		3000만원 × 15.4% = 462만원	
ISA과세	(1500만-200만원) × 9.9% = 128만7000원		(3000만 - 500만원) × 9.9% = 247만5000원	

※ 배당수익률 연 5.0% 가정시



제스처로 사람을 읽는 법 8가지 - ②

4 관심과 무관심의 제스처

관심이 있으면 머리를 기울이는데, 이는 열심히 듣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반면에 무관심하며 자세가 바뀌고 산만해지는데, 기울었던 고개를 바로 들고 등을 폈다 구부렸다 하거나, 천장이나 시계, 혹은 다른 쪽을 바라보는가 하면 몸을 출구 쪽으로 돌리기도 한다.

5 의사결정의 제스처

사람들은 대개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더욱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나 힘든 결정을 내하려고 할 때 서성거리곤 한다.

이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사고의 방향을 잃게 하는, 그리고 그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판매업 종사자들은 고객이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무엇을 살지 결정하려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6 의심과 은폐의 제스처

의심과 은폐를 나타내는 제스처를 다른 말로 왼손의 제스처라고도 한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 좋지 않다'라는 속어적 의미로 쓰인다. 수화법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위로 펼쳐보이는 것은 '선'을 의미하는 반면에 왼손 새끼손가락은 '악'을 의미한다.

무언가 숨기면 제스처의 조화가 깨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전혀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면 뭔가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대가 하고 있는 말에 의심과 불확신, 거부감과 회의를 느끼면 안경 너머로 응시하거나, 마치 좀더 확실히 보고자 하는 듯 눈을 가느다랗게 뜨면서 팔짱을 끼거나, 몸을 흔들어대거나, 다리를 꼬거나, 머리를 가우뚱거리다. 또 몸을 약간 돌려 옆모습을 보이거나 코를 만지고 부비는 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의심이 크면 결눈질을 하기도 한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세무상 순손익액 계산시
임의 내용연수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로 변경해 재계산해야함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
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792, 2023.03.16

질 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63①(1)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
가시 순손익액에 반영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
각비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 등을 평가할 때, 같은 영 제56조제1항의 순손익
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
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
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
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
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
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국제세원-642, 2023.04.17

질 의

-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지
급하는 경우 수령한 사용료 변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비과세 면제신청서 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매 지급 시점마다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
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
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
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
작하는 날임

서면법인-566, 2023.05.17

질 의

- 질의법인은 '05년 개업하여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14년 본점을 전북 김제시로 이
전한 후 제조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18년 제조업에
서 최초 소득이 발생함
- 김제 백산면 산업단지('09년 국토해양부에서
김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낙후지역에 대한 지
역개발사업)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17②에서 규정한 사업개시

일의 의미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5722, 2023.08.10

❏ 질 의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장물의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관리자가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 할 때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이하 "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갑이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손실보상금에 해

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부가-5722, 2023.08.10

❏ 질 의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 부부공동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8④(2)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A, B)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3월의 월급' 이르면 19일 받는다... 국세청, 지급일정 10일 이상 단축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국세청 측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장, 암참 만나 외국계 기업 국내투자... 세금지원 약속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327.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61.3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암참 대표단 역시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

APA란 그룹 내 계열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이 사전 협의로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소득자료 제출 세액공제' 사업자 98%가 깜빡...국세청 직권환급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4. 3

-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Ⅰ 세정지원 내용 요약 Ⅰ

구 분	납부세액 발생	환급세액 발생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직권 연장 (4. 1. → 7. 1.)	환급금 신속 지급 (30일 내 → 10일 내)

-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

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보다 4.4만여 개 증가하였음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 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 30.(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576의8)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금)부터 파

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제출

- (납부)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5. 2.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6. 3.까지)

참고2 -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 (건설·제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조 중소기업 선정(5.2만 개)
- (수출)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1.1만 개)
-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선정(0.2만 개)

Ⅰ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Ⅰ

구 분	선정기준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세정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12. 31.까지 한시 면제)
-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내(4. 11.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참고 3 - 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Ⅰ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자료 Ⅰ

유형	제공 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동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주요 개선사항

-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 신고도움자료 : (23년) 392개 유형 → (24년) 414개 유형(+22개 유형)
-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 (23년) 38개 항목 → (24년)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
- (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 (취약분야 안내) 법인 소유 주택 · 요트 · 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취약분야 개별분석자료 주요내용

- (주택) 사주 일가 등의 법인 소유·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 (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 (합병·분할) 합병·분할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합병·분할 과세제도'의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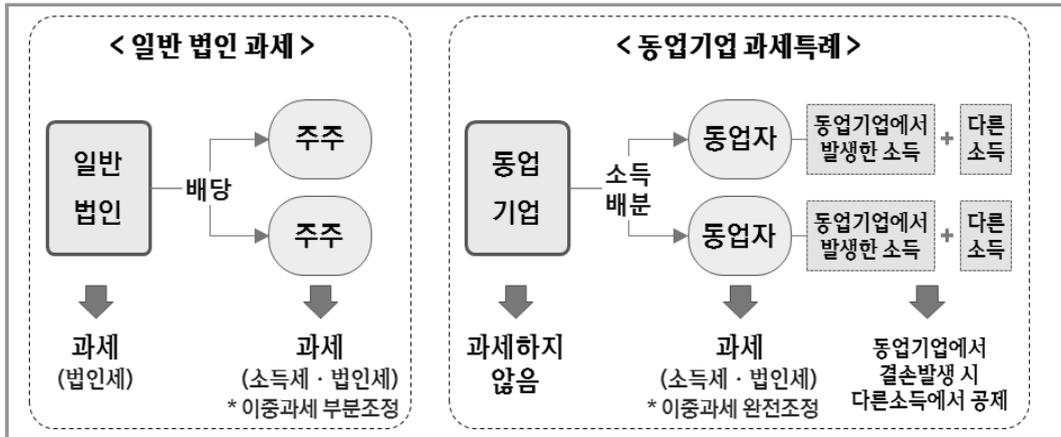
□ 모바일 안내

-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
- (공제·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중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참고4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 동업기업 과세특례

- (개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고방법 개선

- (중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부속 서류 포함 14개 서식)를 수동으로 신고
- (개선) '24. 3월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의 전자신고를 통해 수동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 오류 해소

참고5 -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계·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Ⅰ 주요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사례 Ⅰ

- ①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 ②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③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④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⑤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⑥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 ⑦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⑧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 ⑨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6 -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정 사례

Ⅲ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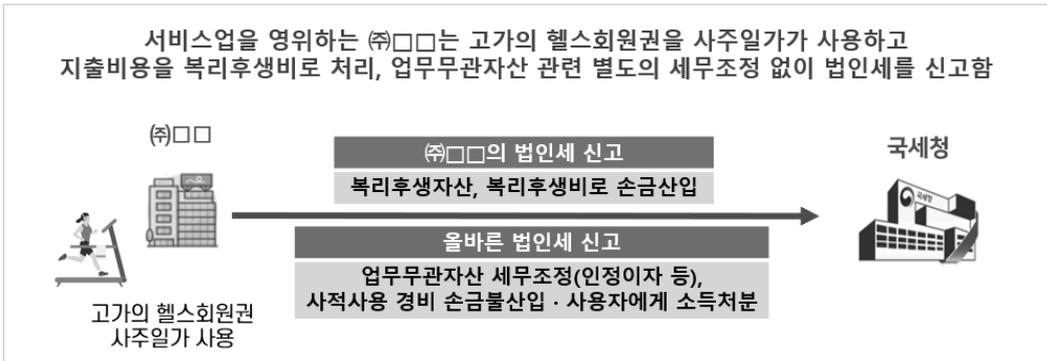
-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주)□□은 고가의 ○○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고,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

□ 검증결과

- (주)□□이 취득한 ○○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여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정
 - *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가지금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주일가가 사용한 고가의 헬스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세무조정하고
 ✓ 지출한 경비는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정

㉔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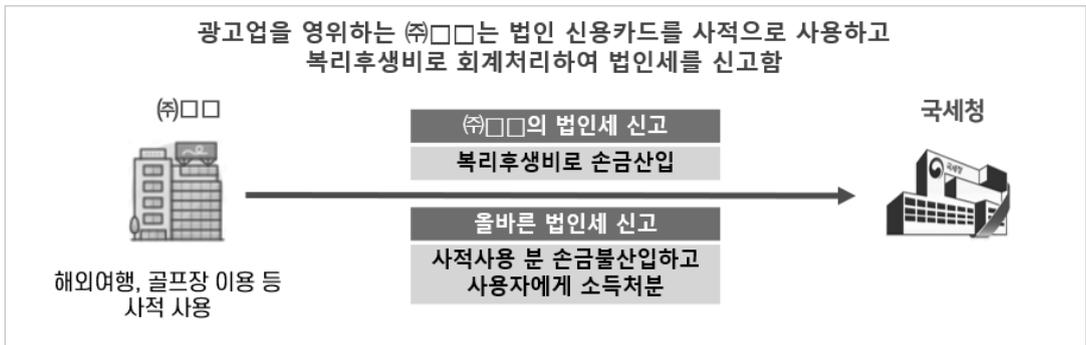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 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신고내용

-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

□ 검증결과

- (주)□□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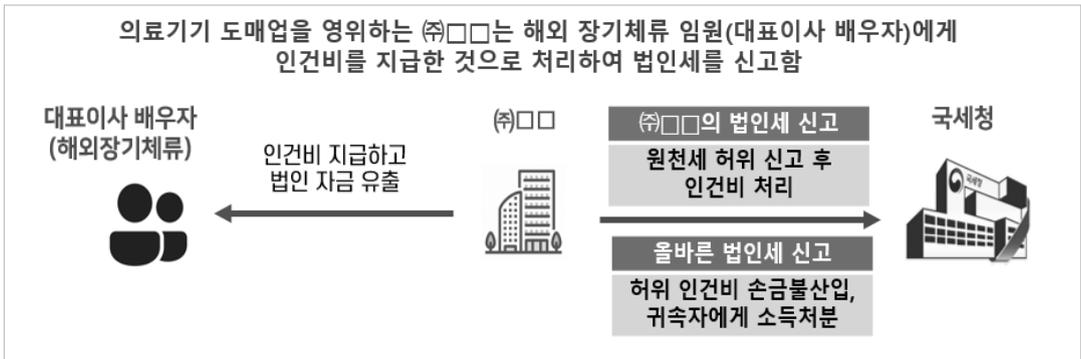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해외현지법인, 해외거래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
 ✓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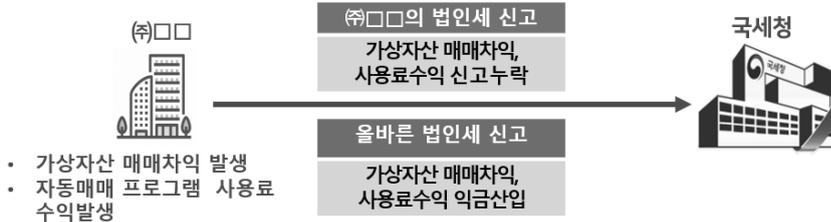
□ 신고내용

- (주)□□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가상자산매매차익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누락

□ 검증결과

- (주)□□의 가상자산 매매내역,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여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주) □□은 가상자산 매매차익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수취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누락함



✓ 가상자산 매매차익,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신고누락 분 추징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주택 및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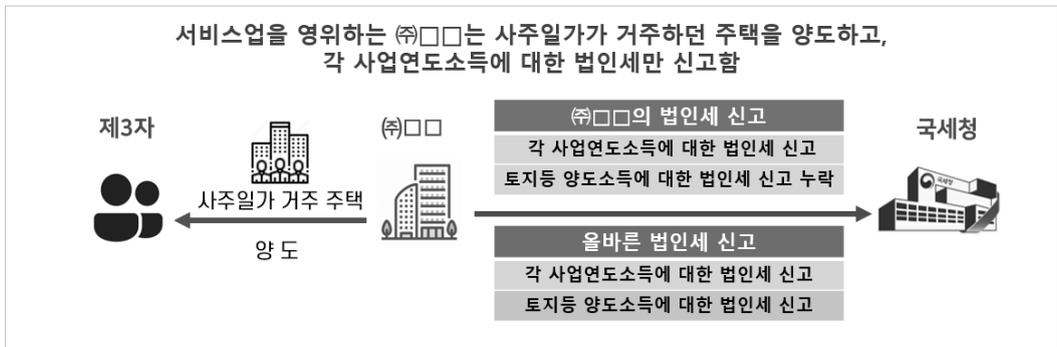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신고내용

- (주)□□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 검증결과

- 재산세 과세내역·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정



재산세 과세내역, 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분에 대해 법인세 0억 원 추정

R&D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국세청, 2024. 9

※ 해당 체크리스트는 납세자의 R&D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활동 여부, 기본적인 공제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포함하여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공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D 세액공제 체크리스트(인건비)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여부
인건	물적요건 독립된 공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	○ 연구원들이 전담부서등에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수행할 것	적합 (Y) 부적합 (N)
	검직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연구원은 연구 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이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업무(행정, 홍보, 품질관리 등)를 수행하지 않을 것 ○ 전담부서 등의 지원인력은 연구요원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 ※ 연구보조 공제O, 연구관리 공제X	적합 (Y) 부적합 (N)
비대상	공제대상 조특령 별표6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	○ 복리후생비 등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비용은 인건비에서 제외할 것 ○ 기업이 납부한 고용인의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제외할 것	적합 (Y) 부적합 (N)



주주 임원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특칙 제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p>○ 해당 법인의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 소유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 소유하게 되는 자 3. 2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단,「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경우는 제외 	적 합 (Y) 부적합 (N)
----------	--	---	------------------------------

R&D 세액공제 체크리스트(재료비)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여부
재 료 비	견 본 품 등	<p>○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 추가 공비를 포함) ②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p>○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는 포함하지 않을 것(조특통9-8...1①3호)</p> <p>○ 자체 제작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포함(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2017.01.11.)</p>	적 합 (Y) 부적합 (N)
	연 구 · 연 구 개 발 서 비 스 업 자 가 직 접 사 용 하 기 위 한 연 구 · 시 험 용 시 설 의 비 용	<p>○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시험용 시설(조특령 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임차 ② 조특령 [별표 6]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p>*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p> <p>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p> <p>○ 실험기구 및 장치 등 고정자산의 구입비용은 제외(법인 22601-1447,1986.05.06.)</p> <p>○ 건물임차비용 제외(법인22601-771,1990.04.02.)</p>	적 합 (Y) 부적합 (N)

R&D 세액공제 체크리스트(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기타)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여부																				
위탁·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용역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	<p>○ 연구개발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체R&D</th> <th>위탁R&D</th> <th>재위탁R&D</th> <th>공동R&D</th> </tr> </thead> <tbody> <tr> <td>일반R&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신성장R&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비스R&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국외기업 전담부서 위탁(O), 단, 신성장R&D(X) - 신약임상 비용(1-3상)은 해외위탁 공제 * 서비스R&D는 자체R&D 한정하여 인정 (과학기술분야 결합된 서비스R&D의 경우 위탁·공동연구개발도 인정)</p>	구분	자체R&D	위탁R&D	재위탁R&D	공동R&D	일반R&D	○	○	○	○	신성장R&D	○	△*	△*	△*	서비스R&D	○	△*	△*	△*	적합 (Y) 부적합 (N)
	구분	자체R&D	위탁R&D	재위탁R&D	공동R&D																		
일반R&D	○	○	○	○																			
신성장R&D	○	△*	△*	△*																			
서비스R&D	○	△*	△*	△*																			
위탁·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조특령」별표6.1.나.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재위탁 포함)할 것	<p>○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재위탁 포함) 또는 공동연구 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연구기관 - 전담부서등(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4②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p>○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p>	적합 (Y) 부적합 (N)																				
기타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연구 개발비 등이 아닐 것	<p>○ 조특령 제9조①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적합 (Y) 부적합 (N)																				



R&D 세액공제 체크리스트(인력개발비)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여부
인력개발비	위탁훈련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전자교육 포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 비용 ※ 경리·인사 등 관리 부분 자체·위탁교육비 제외(조특통 10-9···1)	적합 (Y) 부적합 (N)
	직업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비용	○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특칙 §7⑨)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 2.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4.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등	적합 (Y) 부적합 (N)
	인력개발기술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특칙 §7⑩)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요원의 인건비, 실습재료비, 훈련시설의 임차비용 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 공제 안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최대주주 등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6제2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5년 이내에 중도해지로 환급받은 금액 3.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적합 (Y) 부적합 (N)
	생산성향상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에 사용된 비용	○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특칙 §7⑪) 1. 소프트웨어관리·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 교육비로서 교육훈련용교재비, 강의료 등 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기관에의 위탁훈련비 (한국생산성본부 위탁훈련비 제외) 3. 한국콘텐츠진흥원에의 위탁교육비용 4. 조중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 훈련비용 5. 해외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적합 (Y) 부적합 (N)

사 내 대 학	사내기술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의 운영비	○ 공제가능: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강의료, 실험실습용 물품시설 임차비, 교육훈련생에게 지급한 수당 및 식비	적 합 (Y) 부적합 (N)
맞 춤 형 고 교 운 영 등	특정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	○ ‘특정학교’란 아래의 고등학교를 말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54에 따른 고등기술학교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적 합 (Y) 부적합 (N)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 후,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1.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및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으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 국세청, 2024. 9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 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21년~'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해 줍니다.

-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내역 |

(단위: 명, 백만 원)

귀속	제출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
'21년	809	493	316	20	5	13	2	7	3
'22년	1,297	617	680	32	8	24	6	8	2

-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직권 환급 내역 |

(단위: 명, 백만 원)

귀속	계		법인		개인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
'21년	609	40	421	33	188	7
'22년	941	176	507	160	434	16

-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23. 12. 31.)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예) '26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 '26년 귀속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및 요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한 자
공제금액(한도)	용역제공자 인원 수×300원(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공제)
적용기한	'2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23.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연장)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 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 (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¹⁾」, 「전자제출 화면통합²⁾」,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³⁾」 등 쉽고 편리한 제출 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하였으며,
 -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 3) 기존 2단계 검증절차(형식검증·내용검증)를 원클릭으로 완료
-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 세액공제 도입 배경
 - 일반적으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나, 용역제공자*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자(사업장제공자·용역 알선중개업자)에게 부여
 - * 용역제공자 9개 업종 :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육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도입('21. 11월)
- 세액공제 요건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 *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 * 용역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적용
- 세액공제 금액
 -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참고 3 - 미리채움 서비스·전자제출 화면통합

① 미리채움 서비스

- (개요) 소득자 정보,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 내용을 “미리채움(pre-filled) “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효과) 동일한 소득정보를 매월 입력하는 불편 해소,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전 방지, 소득자수가 많지 않고 매월 지급액이 유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제출편의 향상

② 전자제출 화면통합

- (개요) 매월 제출하는 여러 소득자료를 불필요한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개편
- (효과) 입력화면 통합으로 【이전단계】 , 【다음단계】 로 화면이동을 하지 않아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제출시간 단축

알박기 · 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4. 8

-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유형별 조사대상자 /

유형 1	▶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유형 2	▶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
유형 3	▶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차익을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유형 4	▶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주택 거래량 및 가격지수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택 거래량(호수)	2,021,865	1,620,781	933,347	928,795
주택 가격지수	95.2	104.6	98.2	96.2

* 출처 : 한국부동산원

-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에 속아 일용 근로로 어렵게 모은 돈 사라져(기획부동산 분석 사례) -

- ▶ '22. 12월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 B의 말만 믿고 △△도 □□시 소재 토지를 1천만 원에 지분 매입(6명 공동소유)하였으나, 다수가 지분으로 토지 소유 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토지는 하천부지로 개발가능성이 없어 1천만 원을 잃게 되었음

- 알박기로 150배 차익 거둬(알박기 분석 사례) -

- ▶ A는 '22. 11월 □□시 소재 토지를 1천만 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 간을 지연시킴에 따라 '23. 4월 토지 양도금액 150억 원에 더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100억 원을 추가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무허가 건물 거래 현황(국세청 분석) /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0월)
1,218	1,339	1,037	848	572

-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대상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23명

-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탈루 선정 사례

-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임원 B의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평당 ·백만 원에 취득한 이후 1달 이내 6명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공유지분으로 평당 ·백만 원(3배)에 판매하고 B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세금을 탈루

유형 2.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명

-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을 통해 단기(6~12개월)에 높은 이자로 빌리는 자금

◇ 알박기 투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선정 사례

- A는 '21. 4월 □□시 소재 주택이 이면도로를 ·억 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켜, '21. 11월 "사업포기 약정금액" 명목으로 ··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유형 3. 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되었습니다.
 - * 양도소득세 무신고 12명, 취득자금출처 불분명 20명
-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 무허가 건물 투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선정 사례

- △△ 주택재개발 사업지역 원주인이 아닌 B는 '20. 1월 무허가 건물 2채를 해당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각 〃억 원에 취득한 후 이 중 1채를 '20. 5월에 〃억 원(6배)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유형 4.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18명

-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 선정 사례

- A는 '04. 4월 △△억 원에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22. 7월 결손법인 B에게 〃억 원에 직거래로 양도하였고, B는 양도 당일 다른 법인 C에게 〃억 원(5배)에 재양도하여 A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을 결손법인인 B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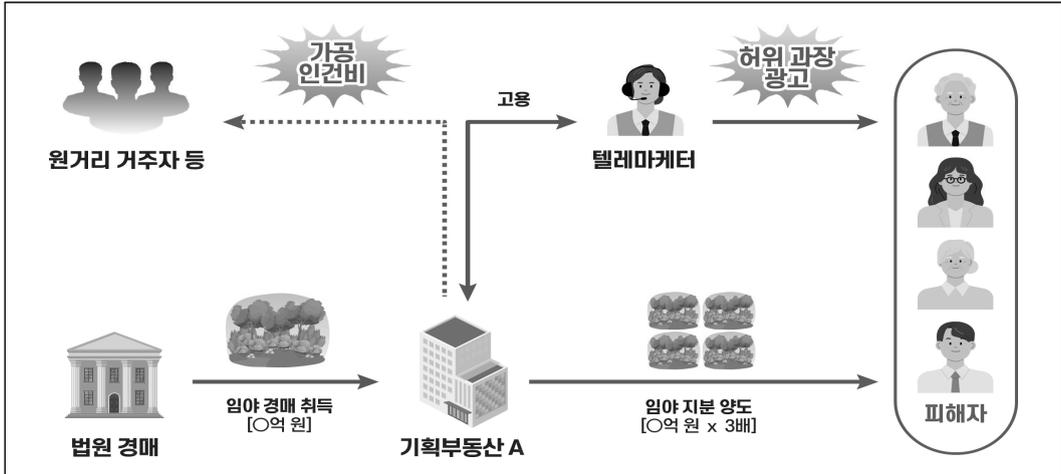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세무조사 착수사례

사례 1 기획부동산이 주로 생계비·노후자금을 노리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기획부동산)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 양도 후 세금탈루



《 피해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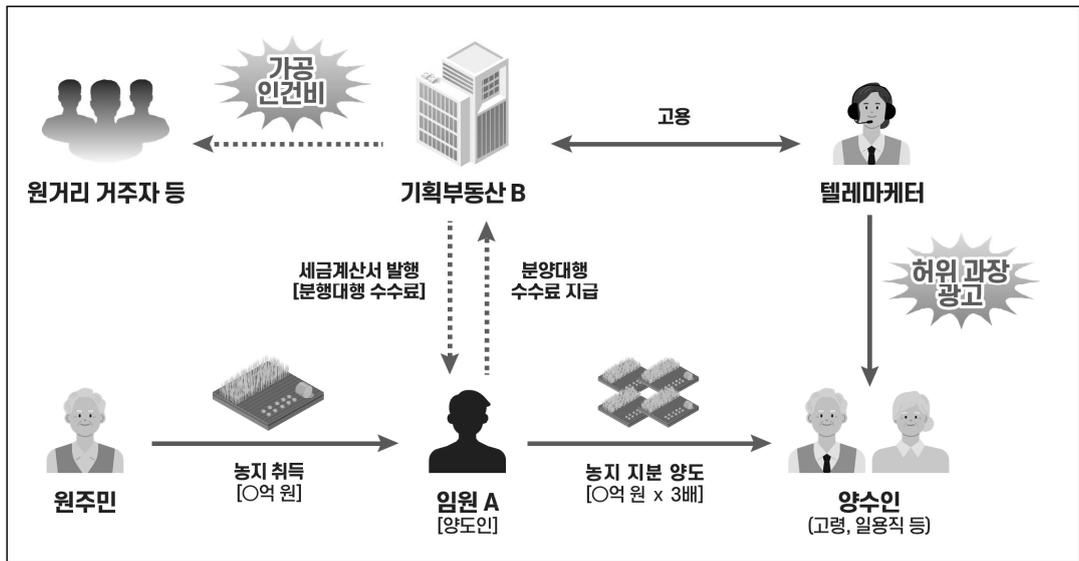
- ▶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하여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
- ▶ 해당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 특히,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주요 혐의내용

-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저가에 취득한 후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 양도
-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나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세금 탈루

- 향후 계획
 - 가공인건비 등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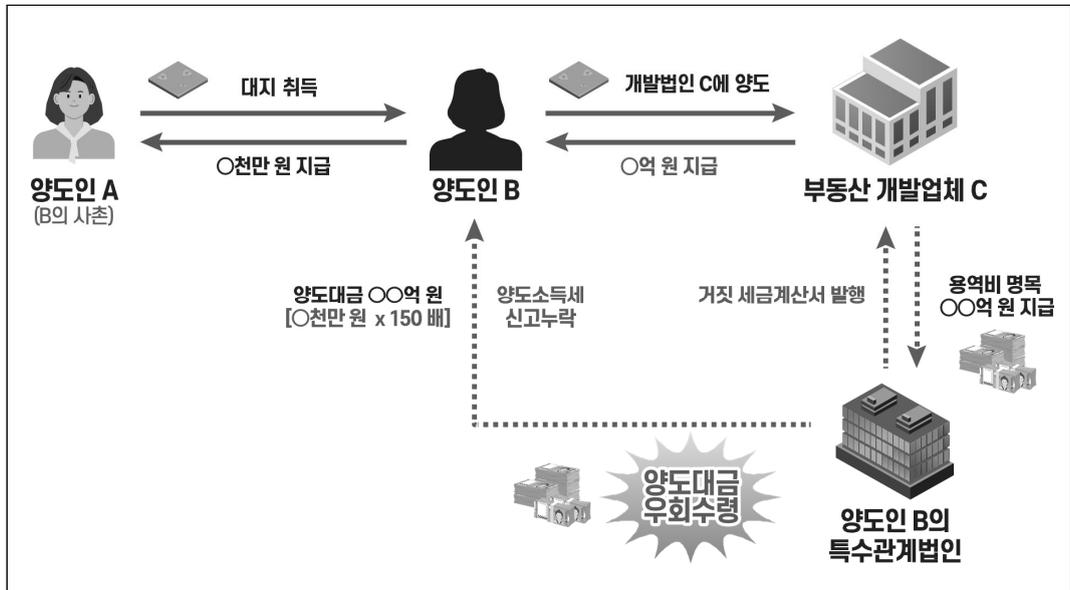
사례 2 **기획부동산이 임원을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 양도 (기획부동산) 후 세금 탈루**



- 주요 혐의내용
 - 기획부동산 법인 B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임원 A의 명의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양도
 - * 양수인 대부분이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 임원 A는 양도차익의 대부분(84%)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기획부동산 법인 B에게 지급하고 기획부동산 법인 B는 허위 인건비 등 계상하여 관련 세금 탈루

- 향후 계획
 -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조사

사례 3 알박기 수법으로 받은 고액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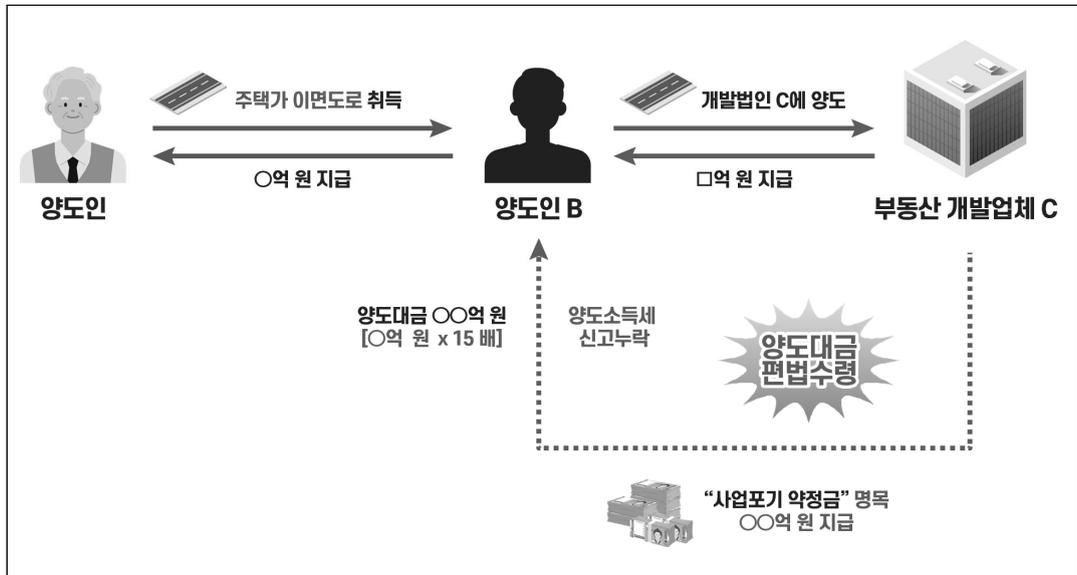
- 부동산 개발업체 C가 △△일대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양도인 B는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 A가 보유한 대지를 1천만 원을 주고 저가에 취득
- 저가 취득 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100억 원(취득가액×150배)의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 양도인 B의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

□ 향후 계획

-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사례 4 **알박기 수법으로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액에 양도하고 대금을**
(알박기) **편법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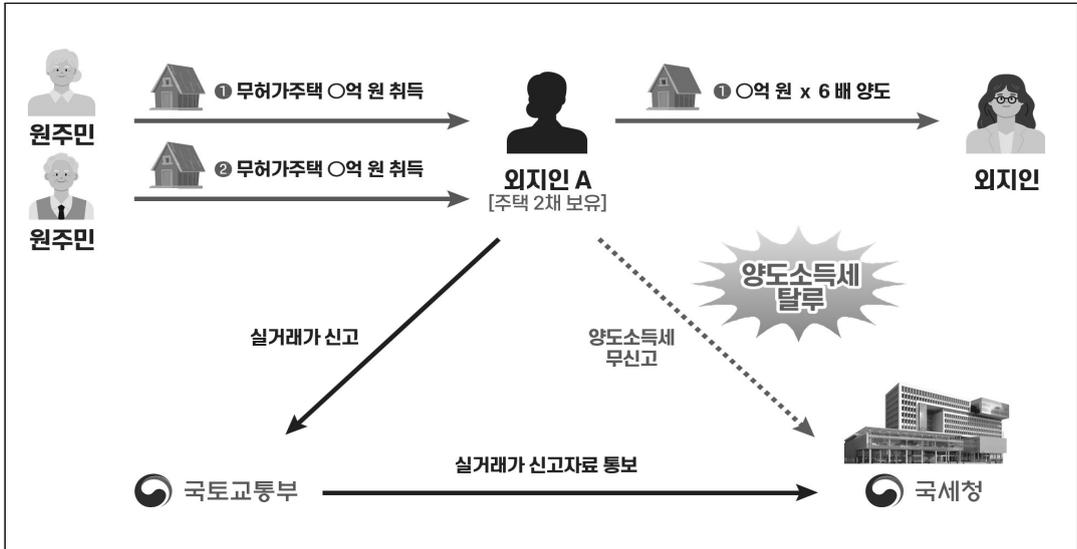
□ 주요 혐의내용

- 양도인 B는 □□일대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C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취득
- 양도인 B는 취득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는 알박기 수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C의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C로부터 ○○억 원(취득가액×15배)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 향후 계획

-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사례 5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주택 2채를 취득한 후 단기에 고가 재양도하면서**
(알박기) **발생한 양도차익을 무신고한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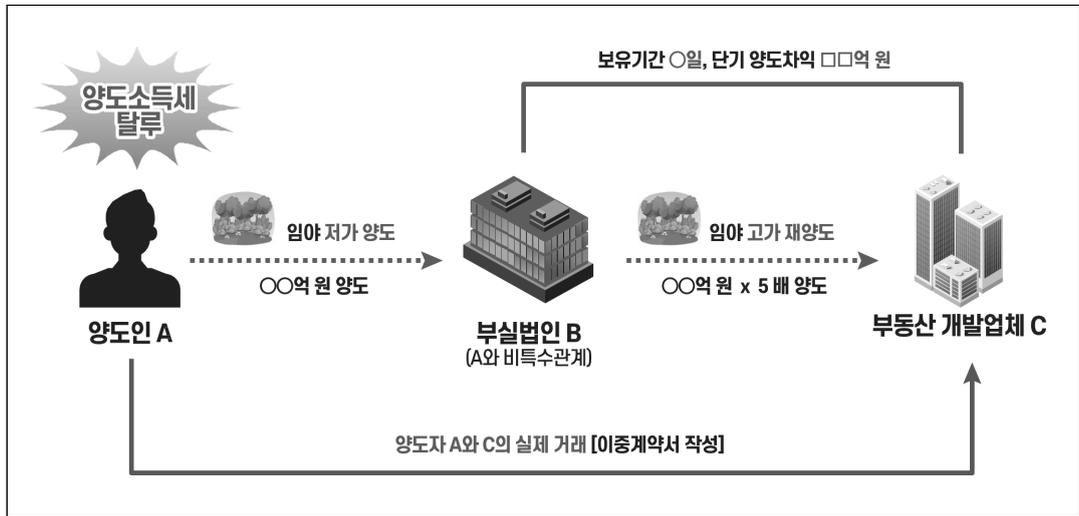
□ 주요 혐의내용

-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 A는 ◇◇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0억 원에 취득한 다음 그 중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
- 외지인 A는 고액의 단기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

□ 향후 계획

-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사례 6 개발지역 임야를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양도인 A는 경매로 취득해 18년간 보유하던 개발지역 임야를 부실법인 B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0.0억 원에 양도하고
- 부실법인 B는 양도인 A로부터 임야를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하였으나, 부실법인 B는 수년 간 결손이 0억 원 발생한 법인으로 법인세 0억 원 체납 중
- 양도인 A는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에도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

□ 향후 계획

-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2024년 회계공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 한 단계 높아진다

- 고용노동부, 2024. 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되어 3개월분 조합비('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천인 이상 노조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 (총연합단체별 참여율)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정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단위노조(산하조직)가 '23년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뎠던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며, "올해



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붙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개요
-----------	------------------------

① 목적

- 노동조합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

② 주요 내용

-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 (공시 방법) 전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3.1.~4.30.) 중에 입력
 - *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 클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하여 바로 접속
-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 공제
 -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단, 전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전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③ 공시제도 교육 및 회계 역량강화 지원

- (제도 교육)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접속 후 시스템안내 - '자주묻는질문'에서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바로 시청하는 것도 가능(노동조합 회계공시 검색)
- (컨설팅) 예산·결산체계 정립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1:1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 * ①수행기관이 회계사를 지원하거나, ②노조가 지정한 회계사가 컨설팅하는 방식
- (회계감사원 교육) 전문강사(공인회계사)가 감사계획 수립,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사례 등 감사 실무교육 진행